# IPA 기법을 통한 교사들의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 차이\*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Young Children's Rights

고은경¹ 강진주²

Eunkyoung Goh<sup>1</sup> Jinju Kang<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regarding young children's rights.

**Methods**: 171 early childhood teac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aired sample t-test and the IPA graph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right.

**Results**: First, the teacher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children's rights to be high but low in institutional performance. The main effect of teaching years on the perception appeared significant only regarding performance of the rights of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The main effect of teacher education experiences was significant in all areas except the importance of survival rights. The results from Two-Way ANOVA showed the two variables have no interaction. Second, the second quadrant of the IPA matrix displayed the items regarding initiative and autonomy of young children. Both inexperienced- and highly-experienced-teachers, when they had teacher education, recognized that the items related to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further improved.

**Conclusion/Implications**: We discussed the various ways in which children's rights should be improved and ways of improving teacher education according to teacher variables in order to promote young children's rights.

key words young children's rights, teach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s right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up>1</sup> 제1저자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조교수

#### 2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jinjukang@gmail.com)

# I. 서 론

1989년 UN이 아동권리협약을 공표한 일 년 뒤인 1990년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국이 되어 아동권리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 아동권리

협약국은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정부는 2017년 12월 27일에 5·6차 통합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UN의 아동권리는 4가지 기본권으로 구성되는데, UN이 표명한 4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황옥경, 2010). 아동권리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협약 제3조),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협약 제6조)을 토대로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먼저, 생명권은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과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보호권은 학대, 방임, 폭력 등 위해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아동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으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설명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8).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위급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 4가지 아동권리 내용 중에서도 생명권이나 보호권과 같은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들이 우선적으 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동의 권리가 만 18세 미만으로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 들은 어린 유아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자기결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참여권이나 발달권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성인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한 생 명권, 보호권의 내용을 유아의 주요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구미향, 황소영, 2014).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호자로서 유아교사의 역할이 더 욱 강조되었으며, 아동권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보호권과 생명권에 관한 내용이 더 집중되었 다(김정화, 2017; 장원주, 이화도, 2017). 실제로 아동권리에 관한 보육교사 인식을 조사한 논문 (양순경, 2012)에서 교사들은 아동권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유아의 방임 및 학대"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아동권리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정진이, 2014)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이해정도가 낮을 때 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이 낮았으며, 반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성이 높은 교사는 아동권리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6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필수과목으로서 아동권 리와 관련된 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유치원교사의 경우도 2016년 교원 연수 및 교(원)장 자격연수 를 통해 아동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그러나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보호권이나 생명권에 초점을 두어 4가지 권리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다면, 교사들은 참여권이나 발달권과 같이 아동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제공(provision)-보호(protection)-참여(participation)의 단계로 변화되어 왔으며 (김정래, 1999), 아동이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아동권리의 균형적인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가지 권리 중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중요성을 생명

권과 보호권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구미향, 황소영, 2014), 수행에서도 참여권을 위한 실천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서혜정, 2011; 이용교, 2004; 이유미, 안지혜, 2014a;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Shier, 2001; Sinclair, 2004; Wall, 2011). 이에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이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Hart, 2008),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가 유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권리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아교사의 유아권리 인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사들의 유아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과 보육의 맥락에서 유아권리를 위한 교사의 수행 정도도 높아졌다(김정화, 2014; 김태윤, 김미숙, 2018). 따라서 유아권리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교사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 개인의 배경적 특수성에 따라 교사가 유아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내용과 수행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교사의 발달은 교직 생활의 전 과정을 거쳐 지식, 기술, 행동 등이 변화하 는 과정으로서(김현자, 2008),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직전교육뿐 아니라 교육적 맥 락에서 실제적인 경험의 누적이 필수적이다(이혜경, 2010). 또한, 교직생활의 변화 단계마다 교 사의 흥미와 상황적 요구에 따른 현직교육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은영, 2001). 마찬가지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아의 권리를 전문적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유아교사의 교직 경력과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경험은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변인이다. 그러나 이에 대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경력 및 권리교육 경험 등의 변인에 따른 유아권리 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에 대한 결과보고가 상충된다. 가령, 유아교사의 연령과 학력(서영숙 등, 2009; 이미숙, 2010)이 높을수록, 경력(김현진, 신은수, 2008; 서영숙 등, 2009; 이유미, 안지혜, 2014b)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교사교육의 경험이 많을수록(주한수, 2005), 유아권 리에 대한 인식 또는 실천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강인숙과 이희경 (2016)의 논문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이 높다는 반면 연령, 교직경 력, 자격유형, 근무시설유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이유미와 안지혜(2014a)의 연구에서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유아교사의 연령과 담당학급, 아동권리 관련 연수 경험은 유아교사의 인 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주요 변인인 교사의 교직경력과 교육경험이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에도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다 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교사 변인에 따라 교사들 이 인식하는 유아권리의 세부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UN이 명시하는 유아권리의 내용은 4개 범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조숙영, 원혜경, 2016), 모든 아동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권리에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모두 내재한다(Stern, 2006)라고 보는 등 아동권리인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세부항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김정화, 2014; 이영애, 곽정인, 2013; 조숙영, 원혜경, 2016). 또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유아교사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 기준이

상이하였다(김호현, 장희선,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권리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의 차이를 교사 경력 및 권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더불어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교사의 인식 수준이 달라지는 세부적인 권리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수행도 분석)분석 기법을 통 해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중요도 및 현재 근무기관에서 유아 인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 고 있는가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IPA 분석은 1977년 Martialla과 James가 각각의 속성에 대 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한 간 단한 그래픽 도구이다(Abalo, Varela, & Manzano, 2007). 이후, 이 방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기 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IPA 분석은 4분면에 각 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을 펼쳐 보이고, 각 4분면에 대한 해석적 규준을 제안한다. IPA 매트릭스를 통해 4가지 구분의 영역, 즉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될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IPA 기법을 교육 상황에 적용하여 유아권리 수행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중요도와 기관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이를 토대 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IPA를 분석 기법을 통해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를 밝힌 연구(이유미, 안지 혜, 2014a)가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수행을 일상의 존중, 개 인의 존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UN이 명시한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지 못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를 통해, 교사가 유아권리 보장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유아권리교육 의 내용과 방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권리의 내용에 대해 유아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가?

- 1) 유아권리 문항별 유아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권리의 영역별 유아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에 대한 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교육 경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1) 유아권리 전체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2)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1)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2) 유아교사의 경력별 유아권리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어떠한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대구 지역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171부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 171)

	빈도	백분율(%)
성별		
여	171	100.0
남	0	0.0
연령		
21세 이상 ~ 26세 미만	37	21.6
26세 이상 ~ 27세 미만	25	14.6
27세 이상 ~ 31세 미만	60	35.1
31세 이상 ~ 56세 이하	49	28.7
결혼		
기혼	35	20.5
미혼	136	79.5
학력		
학사	161	94.2
석·박사	5	2.9
기타	3	1.8
결측 -	2	1.2
경력		
1년 미만 ~ 4년 미만	34	19.9
4년 이상 ~ 5년 미만	45	26.3
5년 이상 ~ 6년 미만	31	18.1
6년 이상 ~ 18년 이하	61	35.7
기관유형		
유치원	405	70.4
사립유치원	125	73.1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13	7.6
국공립	5	2.9
민간	22	12.9
특수	1	0.6
기타	2	1.2
- · · · · · · · · · · · · · · · · · · ·	3	1.8
담당유아연령		

표 1. 계속

	빈도	백분율(%)
3세 미만 영아	16	9.4
3세 이상 유아	145	84.8
영·유아 혼합연령	3	1.8
결측	7	4.1
교육경험		
무	76	44.4
n ۹		
대학(원)	2	
연수	78	53.8
개인	12	
	3	1.8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m=29.36, sd=5.95)은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21세에서 26세미만이 37명(21.6%), 26세25명(14.6%), 27세이상 31세미만이 60명(35.1%), 31세이상 56세까지 49명(28.7%)이었다. 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9.5%가미혼이었으며, 80.7%가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력(m=5.18, sd=2.93)은 사분위수기준으로 1년차부터 4년미만의 경력이 34명(19.9%), 4년 경력이 45명(26.3%), 5년 경력이 31명(18.1%), 6년 이상 18년까지의경력이 61명(35.7%)이었다. 담당유아연령은 3세이상유아인경우가 145명(84.8%)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인권에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92명(53.8%)으로 '없다'라고 응답한 76명(44.4%)보다 많았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Hart와 Zeidner(1993)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에서 사용한 설문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를 본 연구자들이 번역하고 수정·보완하였다. Hart와 Zeidner (1993)가 개발한 설문지는 중등 이상의 아동이 직접 작성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유아의 권리에 대해 유아교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아교사 7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교사의 경력을 5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교사의 발달단계에 관한 이론과 연관이 있다. 교사들은 생존기-강화기-갱신기를 거쳐 5년 이상이 되면, 성숙기에 도달한다고 밝힌 Katz(1972)의 교사발달단계 이론과 교사경력을 5년 기준으로 구분한 선행연구(김민환, 2016; 신은정, 2016)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경력 수준을 경력 5년 이하와 6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의 응답은 유아의 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importance)와 기관수행도(performance)의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중요도는 교사에게 해당 문항이 유아인권의 요소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질문하며, 기관수행도는 현재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맥락에서 관련 항목이 실제로 수행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한다.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배경에 대해 질문하는 11문항과 유아인권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수행도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하는 40문항으로 전체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고, 수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기와 유아기의 권리 특성을 유아교사들이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사항 없음(모름)'의 항목을 추가하여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서의 신뢰도를 제시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		
 구분	ㅁ칭ᄉ	2	<u>-</u> - - - -
<b>下</b> 世	문항수	중요도	기관수행도
생명권	8	.589	.751
보호권	11	.735	.864
발달권	10	.757	.875
참여권	11	.820	.909
전체		.922	.960

표 2. 유아권리 구분과 신뢰도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안은 두 연구자에 의해서 2016년 5월 20일부터~7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에 대한 안면타당도는 7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협의회 형태로 2016년 8월 3일에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집단 협의회를 통해 문항구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 문항을 이해하는 데 불명확한 서술이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배포 및 수집되었다. 일부는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교사들의 소개로 점차적으로 배포되었으며, 일부는 교사모임이 있는 곳에서 동시에 배포되었다. 설문지에는 동의서 및 설문작성 방식이 앞장에 소개되었으며 동의서에서명한 경우에만 설문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피하기 위해 기관명을 기입하는 항목은 없었으나 최대한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무작위로 배포되도록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이 배포되었고 186부의 설문이 회수하여 회수율은 93%이었다. 설문응답내용을 검토하면서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1부를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1.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권리에 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수행도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평균을 내어 하위범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평균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행도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교육경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교사의 경력과 교육경험에 따른 중요도 및 기관수행도 인식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을 통하여 중요도와 기관수행도를 2차원의 도표로나타내어 도표에 위치한 각 문항을 살펴봄으로써 차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였다. X축에는 중요도 인식 점수를, 그리고 Y축에는 기관수행도 인식 점수를 표시하였다. 축의 기준은 각 차원의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IPA 분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IPA는 실제로 산업분야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 해석은 4사분면의 좌표에 항목들이 분포한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Abalo, et al., 2007). 구체적으로 1사분면의 항목들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항목들로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야 하는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고, 2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항목들로써 실제 비지니스 분야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수행에 관심을 두게 된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영역이다. 4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곳으로 이 영역의 항목을 중요도가 반감될 수 있는 영역(possible overkill)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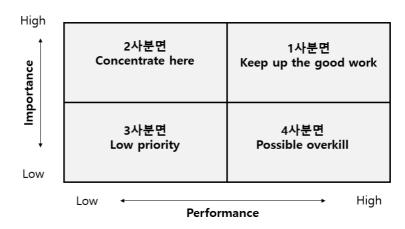


그림 1. 사분면 영역별 IPA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는 IPA 그래프의 X축에는 중요도 인식 점수를, 그리고 Y축에는 기관수행도 인식점수를 표시하였다. 축의 기준은 각 차원의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인권에 대한교사들의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IPA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분석과 달리 유아의 인권에 대한교사의 인식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중요하게 고려되고 기관에서의 수행력도 높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사분면을 제외한 2, 3, 4분면에 분포하는 권리 내용들이 1사분면의 권리 내용들에 비해 기관에서의 실제 수행도가 낮거나 유아교사가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권리로 해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유아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 간 차이

1) 문항별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 간 차이 유아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문항별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 간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항별 중요도와 기관수행도 간 차이

(N = 171)

 구분	문항 -	중요	중요도		기관수행도	
	正8	m	sd	m	sd	t
	1	4.36	.73	3.17	1.17	13.92***
	6	4.92	.30	4.72	.58	4.56***
	7	4.94	.24	4.67	.60	6.15***
생명권	9	4.93	.30	4.70	.55	5.72***
	18	4.73	.51	4.43	.84	5.35***
	21	4.49	.69	3.79	1.07	8.85***
	23	3.58	1.00	3.27	1.06	3.70***
	25	4.82	.44	4.57	.69	4.85***
	하위전체	4.60	.30	4.17	0.52	11.70***
	2	4.65	.67	4.19	.87	7.21***
	3	4.69	.51	4.23	.83	7.54***
	4	4.52	.65	3.96	.95	7.84***
	11	4.70	.59	4.40	.79	5.04***
	20	4.78	.52	4.69	.65	1.89
H휴기	22	4.54	.79	4.39	.84	2.52*
보호권	30	4.67	.63	4.36	.80	6.38***
	32	4.72	.54	4.46	.72	5.30***
	34	4.79	.45	4.58	.66	5.06***
	35	4.33	.82	4.24	.87	1.51
	40	4.86	.41	4.71	.61	3.74***
	하위전체	4.66	0.32	4.39	0.51	8.14***

표 3. 계속

 구분	문항 -	중요도		기관수		
十七	正8 -	m	sd	m	sd	t
	14	4.85	.39	4.33	.86	7.54***
	16	4.61	.62	4.20	.89	5.96***
	17	4.71	.52	4.09	.94	8.74***
	19	4.72	.52	4.27	.90	6.27***
	26	4.73	.52	4.47	.70	5.01***
발달권	28	4.13	.94	3.77	1.01	4.71***
	31	4.63	.67	4.51	.72	2.36*
	33	3.99	.99	3.86	.99	2.23*
	36	3.71	1.18	3.52	1.18	2.66**
	39	4.60	.62	4.33	.77	4.75***
	하위전체	4.47	0.41	4.15	0.62	7.42***
	5	4.71	.54	4.25	.80	7.49***
	8	4.66	.53	4.18	.88	7.53***
	10	4.64	.54	4.20	.76	8.25***
	12	4.68	.53	4.14	.89	7.48***
-1-1-1	13	4.77	.51	4.30	.81	7.78***
참여권	15	4.68	.54	4.37	.79	5.26***
	24	4.18	.85	3.97	.90	3.10**
	27	4.51	.67	4.16	.80	5.95***
	29	4.77	.51	4.31	.78	7.63***
	37	4.36	.91 .55	4.08	1.01	5.19***
	38	4.74	.55	4.44	.78	6.10***
	하위전체	4.61	.37	4.23	.60	9.21***
전체		4.58	.31	4.23	.36	10.99***

p < .05. p < .01. p < .00.

표 3에서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m = 4.58, sd = .31)과 기관수행도 인식(m = 4.23, sd = .36)의 평균은 모두 4.00 이상, 즉 교사들은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과 기관에서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도 인식이 기관수행도 인식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t = 10.99, p < .001), 이러한 차이는 생명권(t = 11.70, p < .001), 보호권(t = 8.14, t = 1.70), 발달권(t = 7.42, t = 1.70), 참여권(t = 9.21, t = 1.70)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권의 20번 문항(고유한 이름 갖기)과 35번 문항(공부할 공간 갖기)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유아권리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 교육경험의 분산분석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및 기관수행도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 교육경험의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유아권리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력과 교육경험 유무별 평균과 표준편차

		교육경험						
유아권리인식	경력	무 유		유	전체			
		m(sd)	n	m(sd)	n	m(sd)	n	
중요도 인식								
생명권								
	5년 이하	4.52(.31)	55	4.63(.26)	53	4.57(.29)	108	
	6년 이상	4.58(.40)	21	4.65(.25)	38	4.63(.31)	59	
	전체	4.54(.34)	76	4.64(.25)	91	4.59(.30)	167	
보호권		/>		( )				
	5년 이하	4.58(.37)	54	4.70(.28)	53	4.64(.33)	107	
	6년 이상	4.63(.37)	21	4.74(.25)	39	4.72(.30)	60	
	전체	4.59(.37)	75	4.72(.27)	92	4.66(.32)	167	
발달권		4.05/.47)	F0	4.50(.04)	F0	4.40(.40)	105	
	5년 이하	4.35(.47)	53	4.53(.34)	52	4.43(.42)	105	
	6년 이상	4.43(.45)	20	4.58(.36)	39	4.53(.39)	59	
취시기	전체	4.37(.46)	73	4.55(.35)	91	4.47(.41)	164	
참여권	ELT OLT	4.40(.41)	E 4	4 GE ( 21)	ΕO	4 57( 97)	107	
	5년 이하 6년 이상	4.49(.41) 4.60(.44)	54 21	4.65(.31) 4.72(.32)	53 39	4.57(.37) 4.68(.36)	60	
	전체 전체	4.52(.42)	75	4.72(.32)	92	4.60(.36)	167	
기관수행도 인식	건세	4.02(.42)	75	4.00(.32)	32	4.01(.37)	107	
생명권								
001	5년 이하	3.97(.44)	51	4.25(.48)	48	4.10(.48)	99	
	6년 이상	4.12(.62)	21	4.42(.46)	36	4.31(.54)	57	
	전체	4.01(.50)	72	4.32(.48)	84	4.18(.51)	156	
보호권	E: "	4.01(.00)	, _	4.02(.40)	0-1	4.10(.01)	100	
—— <u>L</u>	5년 이하	4.20(.54)	50	4.42(.49)	48	4.31(.53)	98	
	6년 이상	4.33(.50)	21	4.64(.38)	38	4.53(.45)	59	
	전체	4.24(.53)	71	4.52(.46)	86	4.39(.51)	157	
발달권								
	5년 이하	3.91(.58)	50	4.22(.63)	48	4.06(.62)	98	
	6년 이상	4.08(.62)	20	4.44(.55)	38	4.32(.60)	58	
	전체	3.96(.59)	70	4.32(.60)	86	4.16(.62)	156	
참여권								
	5년 이하	4.05(.56)	53	4.25(.66)	50	4.14(.63)	103	
	6년 이상	4.25(.66)	50	4.23(.59)	20	4.42(.54)	59	
	전체	4.10(.57)	73	4.37(.61)	89	4.24(.60)	162	

표 4에서,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은 유아교사의 경력이 6년 이상인 경우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있는 유아교사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표 5.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 교육경험에 따른 유아권리 인식의 변량분석

종속변수	변량	SSE	df	MSE	F
중요도 인식					
생명권					
	경력	.07	1	.07	.84
	교육경험	.30	1	.30	3.47
	경력×교육경험	.02	1	.02	.17
	오차	14.13	163	.09	
보호권					
	경력	.08	1	.08	.76
	교육경험	.48	1	.48	4.79*
중요도 인식	, , ,				
<b>-</b>	경력×교육경험	.00	1	.00	.03
	오차	16.42	163	.10	
발달권	_ ,	10.12	100	. 1 0	
260	경력	.16	1	.16	.98
	o ¬ 교육경험	.93	1	.93	5.64*
	교육증립 경력×교육경험	.01	1	.01	.05
	오차	26.46	160	.17	.00
참여권	<u> </u>	20.40	100	. 1 7	
급역근	경력	.29	1	.29	2.21
	교육경험	.66	1	.66	4.97*
	교육경험 경력×교육경험	.01	1	.00	.08
	성력^교육성임 오차	21.67	163	.13	.00
기계소해도 이사	<del>조</del> 사	21.07	163	.13	
기관수행도 인식					
생명권	거리	0.0	1	00	0.00
	경력	.90	1	.90	3.82
	교육경험	2.96	1	2.96	12.52**
	경력×교육경험	.00	1	.00	.01
	오차	35.93	152	.24	
보호권					*
	경력	1.09	1	1.09	4.59*
	교육경험	2.48	1	2.48	10.44**
	경력×교육경험	.07	1	.07	.28
	오차	36.34	153	.24	
발달권					
	경력	1.29	1	1.29	3.67
	교육경험	3.91	1	3.91	11.10**
	경력×교육경험	.03	1	.03	.08
	오차	53.54	152	.35	
참여권					
	경력	1.76	1	1.76	5.16*
	교육경험	2.10	1	2.10	6.17*
	경력×교육경험	.06	1	.06	.18

<sup>\*</sup>*p* < .05. \*\**p* < .01.

표 5에서,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기관수행도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 교육경험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유아권리의 중요도 인식에서 생명권은 경력의 주 효과, 교육경험의 주 효과, 그리고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권의 주 효과( $F=4.79,\ p<.05$ ), 발달권의 주 효과( $F=5.64,\ p<.05$ ), 참여권의 주 효과( $F=4.97,\ p<.05$ )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경력의 주 효과 및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생명권을 제외한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유아교사의 경력이 아닌 교육경험에 따라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교사의 경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아권리의 기관수행도 인식에서 생명권은 교육경험의 주 효과(F=12.52, p<.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경력의 주 효과와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경력의 주 효과(F=4.59, p<.05)와 교육경험의 주 효과(F=10.44, p<.01)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발달권은 교육경험의 주 효과(F=11.10, p<.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경력의 주 효과와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권은 경력의 주 효과(F=5.16, p<.05)와 교육경험의 주 효과(F=6.17, p<.05)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경력과 교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경력이 6년 이상이 되면 기관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보호권과 참여권에서 유의하게 높이거나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유아권리에 대한 교육경험은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모든 영역에서 유아교사의 기관수행도 인식을 높인다. 그러나 교사의 경력이 교육경험에 의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유아교사의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

## 1) 유아권리 전체 요소에 대한 IPA 분석

유아권리 전체 요소에 대한 유아교사의 IPA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유아교사의 전체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m=4.58)과 기관수행도 인식(m=4.23)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전체 문항의 50% 이상이 1사분면에 분포하고 있어 교사들은 유아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기관의 수행도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사분면에는 보호권 중 문항 2번(부모와 함께 살 권리), 참여권 중 문항 8번(유아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존중받을 권리)과 10번(유아의 선택을 위해 정보를 얻을 권리), 발달권 중 문항 16번(종교, 인종과 같은 유아의 문화를 존중받을 권리), 17번(유아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할 권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수행이 낮다고 인식하는 문항들이다. 이 문항들은 대체로 유아의 자율성 혹은 주도성이 강조되는 의견의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이 적용되는 문항이다.

3사분면에는 보호권의 문항 4번(유아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발달권 중 문항 28번(유아의 신념이 존중받을 권리), 33번(나이듦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배울 권리), 36번(원하는 시기에 독립 해서 살 권리), 생명권 중에서 문항 1번(발달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권리), 21번(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 23번(유아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에 대한 권리), 그리고 참여권 중에서

문항 24번(나이에 걸맞게 행동할 권리), 27번(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로 존중 받을 권리), 37번(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할 권리) 등이 분포하였다. 특히, 발달권과 생명권의 문항들은 중요도와 기관수행도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한, 다른 영역에 있는 문항들과비교해 문항 간 간격이 크다. 즉, 문항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문항 간 인식 수준의차이도 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4사분면에는 [그림 1]과 달리 일부 문항이 존재하는데, 보호권 중에 문항 22번(유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35번(공부할 공간을 가질 권리)이 있다. 유아교사들은 이 문항들이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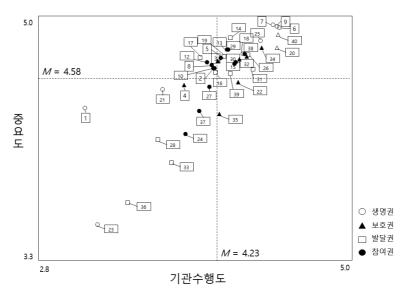


그림 2. 유아권리 전체 요소에 대한 IPA

- 2) 유아교사의 경력별 유아권리 요소에 대한 IPA 분석결과
- (1)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IPA 분석결과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IPA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경력 5년 이하의 교사의 중요도 인식(m = 4.55)과 기관수행도 인식(m = 4.14)은 경력 6년 이상의 교사의 중요도 인식(m = 4.64)과 기관수행도 인식(m = 4.40)에 비해 낮다.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비해 기관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2사분면 영역의 문항을 경력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력 5년 이하의 교사들의 경우 보호권의 문항 2번(부모와 시간 함께 보내기), 3번(유아를 돌봐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참여권의 문항 5번(유아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 8번(유아의 결정이 영향력을 갖는 것), 12번(유아의 요구와 바람이 존중되는 것), 발달권의 문항 16번(유아의 문화적 배경 존중받는 것), 17번(유아의 능력과 자질이 개발되는 것)이 존재한다. 반면, 경력 6년 이상의 교사들의 경우, 2사분면에는 보호

권의 문항 2번(부모와 시간 함께 보내기), 참여권의 문항 8번(유아의 결정이 영향력을 갖는 것), 10번(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 발달권의 문항 14번(마음껏 놀기)이 있다.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교사의 2사분면에는 공통적으로 2번(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8번(유아의 결정 존중) 문항이 있다. 경력 5년 이하의 교사가 경력 6년 이상의 교사보다 3개의 문항이 더 있다. 즉, 경력 5년 이하 교사의 2사분면에는 유아의 문화적 배경, 능력과 자질과 같은 추상적인 권리 문항이 있다면, 경력 6년 이상 교사의 2사분면에는 필요한 정보얻기, 마음껏 놀기와 같은 유아의 욕구를 보장하는 권리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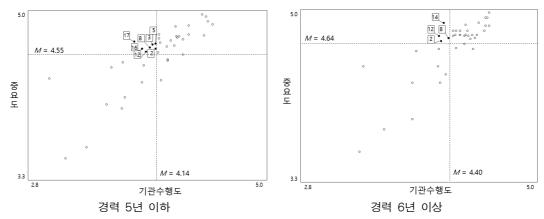


그림 3. 교사 경력에 따른 IPA

#### (2) 유아교사의 경력별 유아권리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IPA 분석

경력 5년 이하 교사의 유아권리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IPA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없는 교사의 중요도 인식(m=4.48)과 기관수행도 인식(m=4.03)은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의 중요도 인식(m=4.63)과 기관수행도 인식(m=4.27)에 비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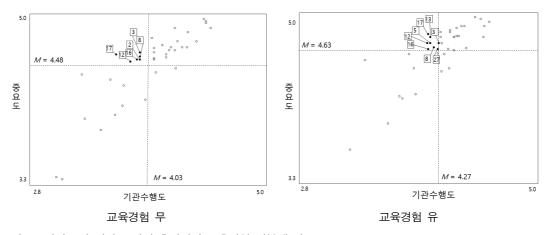


그림 4. 경력 5년 이하 교사의 유아권리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IPA

2사분면에 존재하는 문항으로는 공통적으로 보호권의 문항 3번(유아를 돌봐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8번(유아의 결정이 영향력을 갖는 것), 12번(유아의 요구와 바람이 존중되는 것), 발달권의 문항 16번(유아의 문화적 배경 존중받는 것), 17번(유아의 능력과 자질이 개발되는 것)이 있다.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는 참여권의 문항 5번(유아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 13번(마음을 쓰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것), 27번 문항(자유로운 행동 존중받는 것)이 더 있다.

경력 6년 이상 교사의 유아권리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IPA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없는 교사의 중요도 인식(m=4.57)과 기관수행도 인식(m=4.20)은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의 중요도 인식(m=4.67)과 기관수행도 인식(m=4.51)에 비해 낮다.

2사분면에 존재하는 문항으로는 공통적으로 보호권의 문항 2번(부모와 시간 함께 보내기), 8번(유아의 결정이 영향력을 갖는 것), 참여권의 문항 10번(선택을 위한 필요한 정보 얻기), 발달권의 문항 14번(마음껏 놀기)이 있다. 그러나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문항 19번(최고의 좋은 교육 받기)이 있는 반면, 유아권리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참여권의 문항 12번(유아의 요구와 바람이 존중되는 것)과 15번(스스로 선택한 친구와 있기)이 있다.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2사분면에는 15번 문항처럼 유아교실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욕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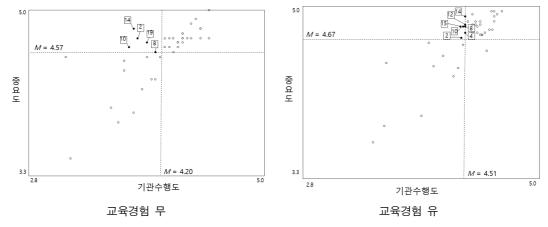


그림 5. 경력 6년 이상 교사의 유아권리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IPA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하여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IPA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의 내용이 어 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와 기관수행도 인식 수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본 후, 유아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

저, 4가지 모든 권리 영역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유아교사들은 대체로 유아의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가 모두 중요하고 수행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은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관수행도는 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사들이 유아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수행정도는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윤진희, 2006; 이명순, 이은주, 2013)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교사 변인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경력과 교육경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분산분석 결과에서 교사의 경력에 따른 주 효과는 보호권과 참여권 에 대한 수행도 인식에서만 나타났으며, 교사의 권리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주 효과는 생명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제외한 모든 인식 영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 었다. 즉, 교사의 유아권리 인식에 경력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아권리교육에 대한 경험 이 교사의 인식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유아권리교육 경험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정화, 2014; 김진숙, 2009; Koo & Hwang, 2014). 이는 교사 경력이 쌓임에 따라 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교사교육이 중요도와 수행에 모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권리 보장을 위해 교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권리 전체 문항의 분포를 먼저 살펴본 후, 교사의 경력과 유아권리교육 경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4가 지 권리의 전체 사분면 분포를 살펴보면, 보호권은 주로 1사분면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참여 권의 경우, 다수의 참여권 문항의 중요도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수행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호권과 참여권은 높은 중요도만큼 기관에서의 수행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명권과 발달권 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으며, 특히 3사분면에 발달권의 대부분과 생명권의 일부가 넓게 분포하여 중요도와 기관수행도를 모두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이 영역이 인식 및 실천의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하다.

기본적으로 아동권리의 4가지 범주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균형적인 보장이 "실현"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IPA 접근을 통해 사분면 영역의 내용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유지 혹은 중단을 판단하기 위해 2사분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유아의 권리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수행도의 인식이 낮은 요소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고취시키고 실제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PA에서 주로 3사분면에 배치되어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발달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본다. 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증명되듯이, 발달권과 참여권은 유아교사들의 중요도 인식이 낮은 영역이다(구미향, 황소영, 2014; 김정화, 2014; 김태윤, 김미숙, 2018; Koo & Hwang, 2014). 아동권리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해당됨에 따라, 연령 범위 내 나이에 따라 발달 특성이 강조되어, 아동권리 내용과 권리교육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즉, 발달권과 참여권처럼 유아의 주도성 및 자율성이 강조되는

권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이 되지만, 성인의 보호와 도움이 강조되는 생명권과 보호권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와 수행도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다(구미향, 황소영, 2014; Koo & Hwang, 2014). 특히, 영유아와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아동학대의 이슈 속에서 급증하였으며(김정화, 2017; 장원주, 이화도, 2017; 양순경, 2012; 정진이, 2014), 이와 관련하여 유아권리 수호 및 관련 교육은 생명권과 보호권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발달권 뿐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생명권과 보호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었다는 선행연구(김정화, 2017; 장원주, 이화도, 2017)와는 다른 결과이다. 생명권에 대한 낮은 인식의 결과는 문항 내용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해석과 관련될 수 있다. 가령, 문항 23번 "유아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것"과 "유아가 때가 되거나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의경우, 모두 중요도와 기관수행도에서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안면타당도를 구하기 위한 교사 협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이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교사가 있는 반면, 독립적인 삶이 굳이 부모 곁을 떠나 다른 곳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혼자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등의 "독립적인 일생생활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유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어 너무나 당연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항목이며, 문항 35번인 "유아가 공부할 공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유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거나 발달을 위한 학습을 유아기의 자율권으로 보지 않고, 공부에 초점을 두어서 현재 유아조기교육으로 해석하여 지나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해석할 것인가 혹은 이 항목이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에 속한 문항들의 편차가 참여권에 속한 문항들의 편 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권리 하위범주 인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범주 내의 문 항 간 내적 일치도, 즉 신뢰도가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참여권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항 간에 의견 일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동안 교사교육을 통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진 것과 관련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의사결정권으로 정의되는 참여권(Shier, 2001; Sinclair, 2004; Wall, 2011)의 내용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유아들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아동중심적 교육관과 부 합되는(강진주, 고은경, 2018)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송희(2010)에서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유아교사는 교실 일상에서 교사의 권위와 힘이 작용되고 있음을 반성하며 행동의 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양순경(2012)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유아권리교육에서 참여권과 관련된 의사표현 의 권리행사가 인간의 존엄성 다음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언급하면서 유아교사교육이 유 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의 일부 문항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항들이다. 따라서 유아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발달에 더 적합 한" 설문지 문항의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유아의 권리에 대한 관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해당항목들은 유아의 독립성, 자율성, 의사결정력과 같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항목들이다. 유아 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 주로 욕구 충족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오다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존엄성과 자율성, 책임성이 있는 성인과 더불어 한 사회의 공동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Dahlberg, Moss, & Pence, 2007). 이에 따라, "유아권리"의 개념적 외연이 발달론적 관점에서 적합하게 제한될 필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를 자유롭고 책임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IPA 그래프를 살펴보면, 유아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력 6년 이상의 교사들은 보호권을 제외한 3가지 권리가 모두 중요도와 기관수행도가 낮게 인식되는 3사분면에 배치되어 있다. 즉,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생명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수행도가 높아지도록 유아권리 교육에서 관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발달권은 각 항목별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던 유아권리교육 경험을 가진 경력 6년 이상의 교사들에게서도 중요도에 비해 수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4사분면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인식 수준은 다르지만, 교육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하 교사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발달권이 교육뿐 아니라 놀 권리 등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는 권리임(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2014)에도 이를 교육권으로 해석하여, 유아의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기 교육의 특성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 논의는 앞서 논의되었듯이, 유아들의 발달 및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구성되는 "유아권리"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유아에게 적합한 구성요소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실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권리를 기본적으로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지만, 권리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많다(황옥경, 2010). 따라서 유아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4가지 아동권리의 개념도 아동권리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되도록 논리적으로 확장하고, 현실 맥락에서 실제적인 실현이 가능하도록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개념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이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항목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권리에 대한 중요도 및 기관수행도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유아기에 4가지 기본권이 개념적으로 균형 잡힌 교사인식 및 수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발달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제안한다. 최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권리 인식 척도 (조숙영, 원혜경, 2016)가 개발되어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일상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관에서의 일상과 유아기라는 발달적 단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오히려 발달권의 취지에 맞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에 위험이 되는 요인, 가령 학대와 방임, 빈곤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문선화, 2015)이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유아를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적 환경은 보호적 접근의 개입이나 발달단계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하고자 하는 의지, 특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발달권 보장 내용을 고안하고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에 따라 교사의 중요도와 기관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유아권리교육이 교사 경력별로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수행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아권리교육의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주요 이행자이다. 따라서, 아동권리에 대한 그들의 인식 뿐아니라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교사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단순히 유아권리에 대한 홍보를 주입받는 대상이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5세누리과정: 교사용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강인숙, 이희경 (2016).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4), 49-66.
- 강진주, 고은경 (2018). 유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써 기록화의 가능성: 기록화에 서 유아의 참여 역할에 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751-774. doi:10.22251/jlcci.2018.18.3.751
- 구미향, 황소영 (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 김민환 (2016). 수업에 관한 저경력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 과정상의 주요 문제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3), 335-358.
- 김정래 (1999). 아동권리협약 채택 10주년과 한국 아동의 권리. **아동과 권리, 3**(2), 7-11.
- 김정화 (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 구, 15**(3), 343-364.
- 김정화 (2017). 유아 권리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교육, 26**(4), 185-206. doi:10.17643/KJCE.2017. 26.4.10
- 김진숙 (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혜정 (2011). 유아교실에서 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2), 51-79.
- 김태윤, 김미숙 (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97-122.
- 김현자 (2008). 유아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접근방법과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97-221.
- 김현진, 신은수 (2008).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 교사의 개인적 변인(연령, 학력 및 전공, 자격유형, 과거 직업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5**(3), 239-259. doi:10.24211/tjkte.2008.25.3.239
- 김호현, 장희선 (2017).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침해 인식의 모호성과 그 근거에 관한 혼합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1**(2), 169-194.
-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http://incrc.org/column/?uid=12& mod=document&pageid=1에서 2018년 5월 12일 인출.
- 문선화 (2015).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발달권. 동광, 110, 3-38.
- 배송희 (2010). 유아권리 교육을 통한 보육교사의 성찰과 영유아의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 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213-232.
- 신은정 (2016).경력에 따른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자기결정성이 유아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511-535. doi:10.22154/JCLE.17.4.22
- 양순경 (2012). 유아권리에 대한 교사의 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2), 181-196.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2014). **한국 아동의 놀권리 현주소와 대안**. 서울: 사단 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n.d.).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에서 2018년 5월 10일 인출.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중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진희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이은주 (2013).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이행수준. **아동과 권리, 17**(2), 265-284.
- 이미숙 (2010).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 곽정인 (2013).영유아권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988-1003. doi:10.5392/JKCA.2013.13.11.988

- 이용교 (200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방안. **아동과 권리, 8**(2), 169-188.
- 이유미, 안지혜 (2014a).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 간 차이 분석. 유 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569-591.
- 이유미, 안지혜 (2014b).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 육·보육복지연구, **18**(3), 239-259.
- 이은영 (2001). Katz의 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유아교사의 전문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10).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경력교사들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4(5), 287-314.
- 장원주, 이화도 (2017). 유아인권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6**(2), 327-347. doi:10.17643/KJCE.2017.26.2.16
- 정진이 (2014). 보육교사의 인권의식 및 민감성과 영유아 학대 인식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숙영, 원혜경 (2016).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16**(11), 1165-1185. doi:10.22251/jlcci.2016.16.11.1165
- 주한수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황옥경 (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아동과 권리, 14(4), 677-706.
- Abalo, J., Varela, J., & Manzano, V. (2007). Importance values for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 formula for spreading out values derived from preference ranking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2), 115-121. doi:10.1016/j.jbusres.2006.10.009
- Dahlberg, G., Moss, P., & Pence, A. (2007).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anguages of evaluation (2nd ed.). NY: Routledge.
- Hart, R. A.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Y: Earthscan.
- Hart, S. N., & Zeidner, M. (1993).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2), 165-188. doi:10.1163/157181893X00043
- Katz, L. G. (1972). Developmental stages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doi:10.1086/460731
- Koo, M. H., & Hwang, S. (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 집, **10**(7), 119-137.
- Shier, H. (2001). Pathways to participation: Openings, opportunities and obligations. *Children & Society*, 15(2), 107-117. doi:10.1002/chi.617
- Sinclair, R. (2004). Participation in practice: Making it meaningful, effective and sustainable. *Children & Society*, 18(2), 106-118. doi:10.1002/chi.817
- Stern, R. (2006). The child's right to participation Reality or rhetoric? Unpublished doctoral dis-

sertation, Uppsala University, Uppsala, Sweden.

Wall, J. (2011). Can democracy represent children? Toward a politics of difference. *Childhood*, 19(1), 86-100. doi:10.1177/0907568211406756

논 문 투 고: 18.06.26 수정원고접수: 18.07.18 최종게재결정: 18.07.23

부록 1. 유아권리 설문지 문항 내용

구분	문항 설문내용(고은경, 강진주, 2018; Hart & Zeidner, 1993)
	1 유아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심리(발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6 유아가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
	7 유아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
Wed at	9 유아에게 의식주가 보장되는 것
생명권	18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주어지는 것
	21 유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 받지 않은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
	23 유아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것
	25 유아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 <del>봐주는</del> 사람과 함께 있는 것
	2 부모가 유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함께 살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3 유아가 필요할 때 자신을 돌봐주거나 자신의 입장(의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는 것
	4 다른 사람들이 유아가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대우 받는 것
	11 유아의 종교, 언어, 피부색, 소속된 집단이 존중되는 것
	20 유아가 태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 것
보호권	22 유아(아동)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쟁(훈련)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
	30 책임있는 사람(부모, 교사)에 의해서 유아의 권리가 지지받는 것
	32 위험하거나 나이에 걸맞지 않는 불공평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유아가 보호받는 것
	34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해치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35 유아는 공부할 공간이 있는 것
-	40 유아가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14 유아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것
	16 유아가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인종, 집단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
	17 유아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
	19 유아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
발달권	26 유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울 기회를 갖는 것
	28 유아가 자신의 종교나 생활에서의 신념을 선택하는 것
	31 유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
	33 유아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
	36 유아가 때가 되거나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
	39 유아가 배움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받는 것
	5 유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8 유아가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영향력을 갖는 것
	10 유아가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12 유아와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유아의 요구와 바람이 존중되는 것
-1-1-1	13 유아가 자신에게 마음을 쓰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참여권	15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친구들과(정서적, 신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
	24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27 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29 유아의 생각과 의견에 다른 사람이 귀 기울이고 존중해주는 것
	37 유아가 자신이나 타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38 유아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가지는 것